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보다 나은 정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업무 명령(알림)

1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처는 아래 한약재에 대한 잠정 수입, 제조, 판매 및 사용 금지를 명령하니 별도 명령전까지 동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대상품목 : 야명사
○ 관련 법령 : 「약사법」 제62조 및 제71조 제2항
○ 조치내용 : 수입, 제조, 판매 및 사용 금지(별도 명령시까지)
* 참고사항 : 최근 5년간 한약재 '야명사'의 수입·생산 실적은 없음.

2. 아울러 관련 협회, 지방청, 검사기관에는 동 조치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한 약 정 책 과 장

수신자 해당 한약재 제조업체, 한약재 품질검사기관, 관련 협회,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의약품안전관리과장),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의료제품안전과장),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의료제품안전과장),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의료제품안전과장),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의료제품안전과장),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(의료제품안전과장), 보건복지부장관(한의약정책과장), 보건복지부장관(한의약산업과장), 관세청장(수출입물류과장)

사무관 최주영 한약정책과장 전결 2020.2.7. 고호연

협조자

시행 한약정책과-583 (2020. 2. 7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3354 팩스번호 043-719-3350 / tea948@korea.kr / 비공개(5)